

대구예술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규정

(제정 2007.12.06. 교무위원회)

제1조 (명칭) 이 위원회는 대구예술대학교 대학발전기금 조성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안 또는 심의한다.

- ① 발전기금 조성사업, 전략기획 및 추진.
- ② 발전기금 모금 관련 각종 행사 개최.
- ③ 발전기금 기탁자 관리 및 예우 관련 업무.
- ④ 발전기금은 일반기금과 목적기금으로 구분하여 조성, 관리, 증식 한다.
- ⑤ 기타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하여 총장이 위임하는 제반사항.

제4조 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대학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교,내외 인사를 총장이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

③ 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조직을 둘 수 있고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 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한다.

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.

④ 위원회의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발전기금의 종류) ① 일반기부금은 기금의 사용처를 대학에 위임하는 기금으로서 대학발전을 위해 사용한다.

② 지정 및 목적 기부금은 기탁자의 목적에 부응하여 사용한다.

제7조 (현물기부) 발전기금은 현금 외에도 현물기부로 부동산, 귀중품, 유가증권, 각종 기기류, 기타 무형자산을 현물로 기부 받아 대학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.

제8조 (기탁자 예우)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기금 이상의 기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1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.

제9조 (성과급) 위원회가 발전기금 유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운영경비)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유치된 기금의 7%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세칙) 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

구 분	예 우 내 용
기 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홈페이지, 학보에 기탁 내용게재 ○ 각종 대학 홍보물, 간행물 발송 ○ 감사패(장) 증정 ○ 세금감면 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
명 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구예술대학교 교사에 기록 영구보존 ○ 건물, 도로 강의실, 실험실습실, 기자재, 조형물 등에 기부자 이름명명 및 명패부착 ○ 고액 기부자에 대한 기념식수 및 흉상제작 보존
교 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행사, 공연,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 혜택 ○ 학교 부대시설 등 이용의 우선적 편의 제공